

2.1.1 초당대학교학칙

제정	2012. 03. 01	개정	2019. 05. 30	개정	2024. 02. 05
개정	2013. 02. 14	개정	2019. 11. 26	개정	2024. 05. 13
개정	2014. 02. 26	개정	2020. 04. 23	개정	2024. 07. 25
개정	2014. 12. 09	개정	2020. 12. 17	개정	2024. 11. 06
개정	2016. 02. 02	개정	2021. 05. 31	개정	2025. 02. 21
개정	2016. 02. 22	개정	2021. 12. 15	개정	2025. 05. 07
개정	2017. 02. 14	개정	2022. 02. 15	개정	2025. 08. 14
개정	2017. 11. 02	개정	2022. 04. 28	개정	2025. 11. 07
개정	2018. 02. 07	개정	2023. 01. 31		
개정	2019. 01. 30	개정	2023. 07. 17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목적) ①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건학이념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조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2.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교양인 양성
3. 열린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제2조 (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 학과 또는 학부를 두거나 이에 상응하는 ‘전공’ 등의 조직(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으로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산업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개정 2023.01.31., 2024.07.25.>

② 일반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07.25.>

③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전공 및 학생정원) 본 대학에 설치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2.26., 2025.05.07.>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 각 학과(부)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5.05.07.>

③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개정 2025.08.14.>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 (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개 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9.05.30.>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집중수업 교과목 및 계절학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2.14.>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7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4월 16일)로 하고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총장이 정한다.

②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및 전과(부)

제8조 (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6.02.02.>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0조 (자격상실) 제1학년 입학예정자가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 (입학 지원 절차) 입학 지원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12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전형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7.>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부는 입학전형에 따라 단과대학별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 단과대학의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3.07.17.>

제13조 (입학사정) 입학지원자에 대한 사정은 전형별 전형요소에 의하되, 각 전형요소의 반영 여부, 성적 반영

비율, 입학사정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6.02.02.>

제15조 (입학 관련 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르거나,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취소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 <신설 2017.02.14.> <개정 2021.12.15.>

1.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02.14.>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설 2017.02.14.>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신설 2017.02.14.>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신설 2017.02.14.>

제16조 (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매 학년도 제1,2학기를 기준으로 연 2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단,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6조의2 (입학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5. 본교에 재적중이거나 제적 후 1년 이내인 경우

<신설 2021.12.15.><개정 2024.07.25.>

제17조 (입학절차) ①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퇴학 또는 제적하였던 소속 모집단위로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5.31.>

②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02.02.>

④ 단, 학칙 제31조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 <개정 2021.05.31.>

1. 삭제 <개정 2021.05.31.>

2. 삭제 <개정 2021.05.31.>

제19조 (편입학)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유학생전형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02.02., 2021.12.15.>

1.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일반편입학은 4년제 정규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6.02.02.>

제20조 (정원외 입학) 당해 연도 교육부 고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정원 외 전형의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제21조 (전공 선택) 전공(학과)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7.25.>

제22조 (전과(부)) ① 전과(부)는 매 학년도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② 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9.>

제5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3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24조 (미등록 제적) 소정기일 내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26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당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건강 및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 ② 본 대학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항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휴학) 군복무, 육아·출산,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7조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9.>

제29조 (복학) ① 휴학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복학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14.12.09., 2016.02.02.>

② 병역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제3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 또는 수강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2.07.>
2.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2.14., 2019.11.26.>
3. 국내 타 대학에 재적 중인 자(단,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2.14.>
4.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단, 학습법 이수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 1회를 감한다)
5.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7. 학위가 취소된 자
8.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장 교과 및 이수

제32조 (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평생교육과목, 커스텀과목 등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이를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은 이수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2024.07.25.>

제33조 (학점)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등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제34조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 인정) ① 신입학한 학년에 한하여 제33조의 이수학점 이외에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②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③ 특별시험에 관한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의 1 (학습경험 학점 인정) ① 정규 교육과정 이외 입학 전·후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무형문화재 전수경력,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전공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2.14.> <개정 2024.07.25.>

- ② 학습경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2.14.>, <개정 2019.11.26.>

제35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교육목표 및 전공능력 또는 핵심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02. 05.>

제36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부-대학원연계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 시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 2 (소단위 전공과정) ① 다양한 전공 분야 이수 및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05.07.>>

②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05.07.>>

제37조 (공학교육인증)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 2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우수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계약학과제 및 시간제등록학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부) 및 전 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4.2.26.>>

②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원) 및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05.07.>>

제40조 (예비과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학 전이라도 예비 교육 과정을 이수케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입학 후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생
2. 교포, 외교관 등의 자녀
3. 기타 예비과정 수강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 예비과정의 개설과목, 수업시간, 학점 인정 등 예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커스텀교육과정 과목과 계절 학기에 재수강하는 F학점과목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관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하며, 졸업 직 전학기는 9학점 이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2024.07.25., 2025.11.07.>>

②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기준학점 외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진로학점제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진로학점제 교육과정,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의 경우 수강신청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2.07., 2024.07.25.>>

④ 각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로학점제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또는 토익성적 관련 교과목 이수 면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학점을 별도로 인정받는 경우 학기 또는 연간 이수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개정 2024.07.25.>>

제41조의2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

은 학칙 제6조(수업일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이러닝")을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26.〉, <개정 2014.12.09., 2019.11.26.〉

제42조 (타 대학과 상호 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상호 학점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②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4조 (수업방법)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집중수업, 이동수업, 협동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5.07.〉

② 본 대학 학과(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간, 야간, 주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혼합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 신청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05.07.〉

제44조 2 (이동수업)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말한다.

<신설 2025.05.07.〉

② 이동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 3 (협동수업) 관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수업을 말한다. <신설 2025.05.07.〉

② 협동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 (원격수업) ① 방송 및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 (현장실습수업 등) ①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 유관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 산학협동 인턴십 또는 공공 단체에서의 사회봉사, 어학연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수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47조 (다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가 제공하는 전공교육과정 외에도 다른 분야의 전공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형태로 이수하거나 기존 교육과정과 별도로 설계된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01.31.〉

② 삭제 <2023.01.31.〉

③ 삭제 <2019.01.30>

④ 복수전공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4.23.>

⑥ <삭제 2024. 11. 06.>

제48조 (부전공) ① 전공 이외에 다른 1개 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개정 2023.01.31.>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수업 및 성적

제49조 (수업시간표 및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 (시험 및 강의평가)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 및 기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하거나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② 강의평가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전후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하며, 평가대상 교과목 수강생은 강의평가에 펼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2.>

제51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 (출석의무) ① 학생은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방법에 따른 출석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학생 및 조기취업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기준 및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제53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Pass) 또는 NP(Nonpass)로 표시한다.

③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0이상 또는 P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12.09., 2024.07.25.>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D+	1.5
A0	4.0	D0	1.0
B+	3.5	F	0
B0	3.0	P/NP	통과/미통과
C+	2.5	W	철회
C0	2.0	I	유보

④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 (수강과목 철회 및 재이수)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경과 후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② 철회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며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 성적관련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2.02.>

③ 기 이수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제55조 삭제 <2016.02.02.>

제56조 (학점 및 학위취소) ①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57조 (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표 2, 별표 3과 같은 학위를 수여하고,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4.2.26., 2025.08.14.>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하되, 입학년도별 졸업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른다. 다만, 평생교육대학의 졸업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하며, 평생교육대학학사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2.15., 2024.05.13., 2025.05.07., 2025. 08. 14.>

2.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 이상의 취득

3. CDU중핵과목 이수학점의 취득

4. 기타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의 충족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5. 2. 21.>

② 공학부의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공학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③ 학위는 매년 2회(2월, 8월) 수여한다.

④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이수 전공의 학위를 추가로 수여하며,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 등 별도로 설계된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01.31.>

제58조 (학년 수료기준) ①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졸업학점 \ 학년	1	2	3	4
135	34	68	102	135
130	33	65	98	130
120	30	60	90	120
114	29	57	86	114
100	25	50	75	100

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학년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 (편입학생 학점 인정) ① 편입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원적학교에 학적유무의 사실 및 취득학점 조회를 거쳐 해당 학점의 인정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02.>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 학점인정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수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 (조기졸업) 소정의 전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6.02.02.>

제61조의 2 (졸업유예) 졸업사정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2.14.>

제11장 공개강좌

제62조 (공개강좌) ① 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및 지도

제63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회원은 재학생으로 하며, 그 구체적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로 정한다.

③ 총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64조 (학생활동) ①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외 5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시설물의 이용
3.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및 시상의뢰
5.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② 대학의 교육목적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5조 (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6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 및 배포한다.

제13장 포상 및 징계

제67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 있다. 포상의 사유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1. 품행이 불량한 자
 2. 삭제 <개정 2021.05.31.>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한다.
- ③ 징계의 사유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제69조 (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 ④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01.31.>
- ⑤ 등록금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장학금

제70조 (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업계속에 지장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 나머지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직제

제71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72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73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5조 (소집 및 회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체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총장은 자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 (자문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18장 위원회

제77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으로 조직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학과 등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02.>
3. 삭제 <2016.02.02.>
4. 대학(원)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의 안건 중 중요사항
6.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 (기타 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자체평가

제79조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교원

제80조 (책임학점) ①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학기당 9학점(계절학기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강의 또는 연구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학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82조 (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3조 (외국인 입학생)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4조 (학칙의 준용) 위탁생과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84조의 2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2.14.>

제22장 특별수강

제85조 (특별수강생)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학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본 대학교와 국제교육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없는 외국대학의 재학생 포함)

2. 본 대학교 대학원생 중 특정 교과목의 특별수강을 원하는 자
 3. 어학연수생
-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장 학칙개정

제86조 (학칙 변경) ①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칙 변경안을 유인물, 교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② 학칙 변경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③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된 학칙 변경안은 총장이 확정하고, 공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폐교되는 산업대학체제의 초당대학교는 폐교일로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개정되는 일반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자격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대학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중 정당한 사유(휴학 등)로 2018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본 대학교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학 존속기간 중이라도 일반대학 과정이 개설된 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해당 신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영역별 이수학점 수에 대하여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보다 신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이 적은 경우에는 신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⑤ 본 학칙 제정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명으로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학칙 제정 이후에 복학한 자로서 해당 학년에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가 개편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졸업할 수 있다.
- ⑥ 본 학칙 시행 이전에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대학 존속기간 내에는 종전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존속기간 이후에는 일반대학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⑦ 일반대학 전환으로 인한 문제로서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 제38조와 제57조는 201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제41조의2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폐과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IT학부 재적생은 IT융합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IT융합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과 IT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IT융합학부 사물인터넷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IT융합학부 스마트항공로봇전공과 IT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재적생은 IT융합학부 스마트무인항공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2012학년도 경호비서학과에 신·편입학한 재적생은 사회체육학부 경호무도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 2012학년도 사회체육학과에 신·편입학한 재적생은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폐지되는 학(부)과의 존속기한은 해당 학(부)과의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으로 본다.
- ② 폐지되는 학(부)과의 존속기한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원할 경우 타 학(부)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이때, 전과에 대한 사항은 전과규정을 준용한다.
- ③ 폐지되는 학(부)과 소속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존속기한 이후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과 동시에 타 학(부)과로 전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연번	폐지 학(부)과 명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2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3	사회체육학부 경호무도전공
4	실용음악학과
5	안경광학과
6	IT융합학부 사물인터넷전공
7	IT융합학부 스마트무인항공전공

제3조 (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학(부)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부)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부)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상담학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상담학과로 운영한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국제학부	국제학과
뷰티미용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전공	사회체육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와 아동청소년상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상담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학적변동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학(부)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부)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경영학과	창업경영학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학(부)과 소속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해 존속기한 이후 복학을 희망할 경우 타 학(부)과로 전과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학사경고 누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학사경고 부과는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재시행하며, 학사경고 제적은 재학 중 학사경고 횟수를 누적하여 조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폐지되는 학과의 존속기한은 해당 학과의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으로 한다.
- ②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희망할 경우 존속기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타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이때, 전과에 관한 사항은 전과규정에 준한다.
- ③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존속기한 종료 이후 해당 학과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연번	폐지 학과명
1	검도학과
2	경찰행정학과
3	사회체육학과

제3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다음 학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명칭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드론학과	항공드론학과
군사학과	국가안보학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폐지되는 학과의 존속기한은 해당 학과의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으로 한다.
- ②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희망할 경우 존속기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타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이때, 전과에 관한 사항은 전과규정에 준한다.
- ③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존속기한 종료 이후 해당 학과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연번	폐지 학과명
1	건축학과

제3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학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명칭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국가안보학과	군사학과
의약관리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학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명칭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보건의료행정학과	의약관리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제과제빵학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통합모집의 경우 2024학년도 신입학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단과대학 신설·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신설·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단과대학 신설·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변경 전		신설·변경 이후	
구분(단과대학)	모집단위	단과대학	모집단위
간호대학	의약관리학과	창의융합대학	의약관리학과
공공행정학부	군사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창업융합학부	뷰티디자인학과	글로벌혁신대학	소방행정학과
	국제학과		국제학과
항공대학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제3조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 이전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 이후	
구분(단과대학)	모집단위	단과대학	모집단위
항공대학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대학	항공관광서비스학과
창업융합학부	창업경영학과	창의융합대학	경영학과

제4조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호텔조리학과와 제과제빵학과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로 운영하며,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통합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통합 이후 복학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통합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통합 이전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통합 이후	
구분(단과대학)	모집단위	단과대학	모집단위
창업융합학부	제과제빵학과	창의융합대학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호텔조리학과		

제5조 (편제 잔존 기한 경과 여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해당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까지 입학한 모집단위에 속한 것으로 보며, 잔존 기한 경과 후에는 단과대 학별 학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모집된 경우 전공 또는 학과 선택 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학칙 제47조(다전공)제6항 및 제57조(학위수여)제6호의 경우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폐지되는 학과의 존속기한은 해당 학과의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으로 한다.
- ②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희망할 경우 존속기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타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이때, 전과에 관한 사항은 전과규정에 준한다.
- ③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존속기한 종료 이후 해당 학과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연번	폐지 학과명
1	경영학과 창업경영전공
2	경영학과 스포츠경영전공

제3조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학과의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한 학생이 명칭변경 이후 해당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명칭변경전	명칭변경후
항공드론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제4조 (경과조치) 학칙 제34조의1(학습경험 학점 인정)제1항 개정사항에 대해 202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41조(학기당 취득학점)제3항 및 제7항, 제53조(성적평가)제3항 개정사항에 대해 이전에 시행된 경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폐지되는 학과의 존속기한은 해당 학과의 편제가 잔존하는 기한으로 한다.
- ②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희망할 경우 존속기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타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이때, 전과에 관한 사항은 전과규정에 준한다.
- ③ 폐지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이 존속기한 종료 이후 해당 학과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연번	폐지 학과(부)명
1	항공모빌리티학과
2	항공정비학과
3	국제학과
4	글로벌비즈니스학과
5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6	글로벌실버케어학과
7	글로벌조선학과
8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9	스포츠경기지도학과
10	군사학과
11	뷰티디자인학과
12	사회복지상담학과
13	소방행정학과
14	의약관리학과
15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16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학칙 시행 당시 재학생(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 포함)에게는 종전의 <별표2> 졸업

학사학위표를 적용하고,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개정된 <별표3> 졸업 학사학위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학칙 시행 당시 재학생에게는 종전의 “제41조(학기당 취득학점)”을 적용하고,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개정된 ”제41조(학기당 취득학점) 을 적용한다.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개정 2016.02.02., 2016.02.22., 2017.02.14., 2018.02.07., 2019.01.30., 2019.05.30., 2020.04.23., 2021.05.31., 2022.04.28., 2023.01.31., 2023.07.17., 2024.05.13., 2024.07.25., 2025.05.07>

2026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전공	비고
간호학과	225		
치위생학과	25		
항공운항학과	50		
항공관광서비스학과	20		
항공학부	70	-항공정비전공 -무인항공기전공 -항공기제작전공 -도심항공모빌리티전공	
스포츠과학부	40	-스포츠경기지도전공 -생활체육전공	
웰니스라이프학부	75	-헤어미용전공 -메이크업크리에이티브전공 -피부·화장품전공 -사회복지전공 -청소년교육상담전공 -재활헬스케어전공 -의약관리전공 -펫케어전공	
호텔조리관광학부	50	-글로벌서양조리전공 -제과제빵카페전공 -아시안퀴진전공 -해양식문화관광전공	
국방·소방·안전학부	50	-군사학전공 -국방행정드론융합전공 -소방안전관리전공 -첨단방재시스템전공 -지적학전공 -경찰·해양경찰전공	
미래평생교육학부	80	-창업경영전공 -뷰티라이프전공 -웰니스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글로벌푸드전공 -디저트카페전공 -평생교육전공	
UCC자율전공학부	32		
국제학부	0	-한국어학전공 -국제문화관광전공 -글로벌화학기계전공 -스포츠헬스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예술디자인전공	
합 계	717		

- 정원외 입학정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모집은 통합 모집할 수 있음
- 통합모집된 경우 전공 또는 학과 선택 시 별도의 규정에 따름
- UCC자율전공학부의 전공배정은 관련규정에 따름

〈별표2〉 졸업 학사학위 〈개정 2021.05.31., 2022.04.28., 2023.01.31., 2024.07.25.〉

구분	학과(전공)	학위
항 공 대 학	드론학과	공학사
	항공드론학과	공학사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운항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교통물류학과	이학사
간 호 대 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창의융합대학	스포츠경기지도학과	체육학사
	건축학과	공학사
	검도학과	체육학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경영학과	체육학사
		경영학사
	군사학과	군사학사
	국가안보학과	안보학사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학사
	뷰티디자인학과	미용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소방행정학과	행정학사
	외식조리창업학과	이학사
	의약관리학과	보건학사
	제과제빵학과	이학사
	창업경영학과	경영학사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이학사
		이학사
	호텔조리학과	이학사
글로벌혁신대학	국제학과	국제문화관광전공
		한국어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사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공학사
	글로벌실버케어학과	사회복지학사
	글로벌조선학과	공학사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공학사

〈별표3〉 졸업 학사학위〈신설 2025.08.14.〉

학부	전공	학위
간호학과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항공운항학과		공학사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학부	항공정비전공	공학사
	무인항공기전공	
	항공기제작전공	
	도심항공모빌리티전공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경기지도전공	체육학사
	생활체육전공	
웰니스라이프학부	헤어미용전공	미용학사
	메이크업크리에이티브전공	
	피부·화장품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사
	재활헬스케어전공	보건학사
	의약관리전공	
호텔조리관광학부	펫케어전공	
	글로벌서양조리전공	이학사
	제과제빵카페전공	
	아시안퀴진전공	
국방·소방·안전학부	해양식문화관광전공	
	군사학전공	군사학사
	국방행정드론융합전공	
	소방안전관리전공	행정학사
	첨단방재시스템전공	소방방재학사
	지적학전공	행정학사
미래평생교육학부	경찰·해양경찰전공	
	창업경영전공	경영학사
	뷰티라이프전공	미용학사
	웰니스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상담심리전공	심리학사
	글로벌푸드전공	이학사
	디저트카페전공	
	평생교육전공	교육학사
국제학부	한국어학전공	문학사
	국제문화관광전공	관광학사
	글로벌화학기계전공	공학사
	스포츠헬스전공	체육학사
	글로벌경영전공	경영학사
	예술디자인전공	예술학사

(별지 서식 1) <개정 2017.02.14.>

제 00-공용 호

학 위 증

성 명 김초당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주전공)학과. (제1복수전공)학과

(부전공:제1부전공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주전공)학사.(제1복수전공)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00년 00월 00일

초 당 대 학 교 총 장



00학 박사 홍길동



학위번호: 초당대00(학)0000

(별지 서식 2) <개정 2017.02.14.>

제 00-공용 호

수료증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_____ 전공, _____ 전공,
_____부전공에서 제 _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10년 2월 16일



초당대학교 총 장 공학박사 홍길동

